##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2753 제출연월일 : 2024. 8. 12.

부

제 출 자: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5호) 및「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 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4조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제35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 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 야 한다.
-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1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한다.

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 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 제238조 및 제2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 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 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 기를 하여야 한다.

-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 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64조 및 제2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

여야 한다.

제28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5제4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287조의39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3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60조의20 중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3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

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02조 및 제6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합병으로 인하여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

일)

-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5. 본점의 소재지
-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 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 민국에서의 공고방법
-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변경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 · 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

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 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 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第13條(支配人의 登記) 商人은 支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 配人의 選任과 그 代理權의 消 |滅에 關하여 그 支配人을 둔 本| 店 또는 支店所在地에서 登記하 여야 한다. 前條第1項에 規定한 事項과 그 變更도 같다.

했

혅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 第35條(支店所在地에서의 登記) 本 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할 事項은 다른 規定이 없으면 支店의 所在 地에서도 登記하여야 한다.
- 第38條(支店所在地에서의 登記의) 效力)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 할 事項을 登記하지 아니한 때 에는 前條의 規定은 그 支店의 去來에 限하여 適用한다.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 |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 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

아 개 정

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 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 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 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같다.

제34조(통칙) -----

영업소(회<u>사의 경우 본점을 말</u> 한다)의 소재지-----

<삭 제>

<삭 제>

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 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 |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 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 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 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 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第182條(本店,支店의 移轉登記) ①會社가 本店을 移轉하는 경우 는 新所在地와 移轉年月日을, 新所在地에서는 第180條 各號 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

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

등기하여야 한다.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 에는 2週間내에 舊所在地에서 | 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 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 다.

>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 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 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 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 지의 사항을 <u>등기하여야 한다.</u>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 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 기하지 아니한다.

第183條(變更登記) 第180條에 揭|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 記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 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 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 内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 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 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 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第192條(設立無效,取消의 登記)| 設立無效의 判決 또는 設立取消 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本店 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 야 한다.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을 등기하여야 한다.

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 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 다.

第205條(業務執行社員의 權限喪失 宣告) ① (생 략)

②前項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本店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 하여야 한다.

第228條(解散登記) 會社가 解散된 때에는 合併과 破産의 境遇 外에는 그 解散事由가 있은 날로 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 内,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内에 解散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29條(會社의 繼續) ①・②(생략)

③前2項의 境遇에 이미 會社의 解散登記를 하였을 때에는 本店 所在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 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會社의 繼續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第233條(合併의 登記) 會社가 合件을 한 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 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 內에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의 變更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解散登記,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

第205條(業務執行社員의 權限喪失 宣告)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 야 한다.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 단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第229條(會社의 繼續)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 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 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 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38條(合倂無效의 登記) 合倂을 無效로 한 判決이 確定된 때에 는 本店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合併後 存續한 會社의 變更登 記,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된 會 社의 回復登記. 合倂으로 因하 여 設立된 會社의 解散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43條(組織變更의 登記) 合名會 社를 合資會社로 變更한 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内, 支 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内에 合 名會社에 있어서는 解散登記, 合資會社에 있어서는 設立登記 를 하여야 한다.

第247條(任意清算) ① ~ ④ (생 략)

⑤第1項의 會社는 그 財産의 처 분을 완료한 날부터 本店所在地 에서는 2週間내에, 支店所在地 에서는 3週間내에 淸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253條(淸算人의 登記) ①淸算人 | 第253條(淸算人의 登記) ①청산인 이 選任된 때에는 그 選任된 날 로부터,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

한다.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 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 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 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 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第247條(任意清算)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 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 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 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이 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内. 支 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다 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第264條(清算終結의 登記) 清算이 終結된 때에는 淸算人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總社員의 承認이 | 있은 날로부터 本店所在地에서 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内에 清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자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 나 이전할 때에는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제180 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 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만 을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사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 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 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 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① 합자회사의 |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 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 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 를 등기하여야 한다.

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 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第286條(組織變更) ①・② (생략)
  - ③前2項의 境遇에는 本店所在 地에서는 2週間內, 支店所在地 에서는 3週間內에 合資會社에 있어서는 解散登記를, 合名會社 에 있어서는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장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第286條(組織變更)	1.2	(현행
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 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287	7조	의5(설	립의	등기	등)	1
	$\sim$	3	(현행	과 깉	음)		
	4						
				<u>본점</u>	의 소	재지ㅇ	ll서
	<u>2</u> 주	-일	내에				
						•	
	<b>(5)</b>						
					본점-		
제	287	7조의	의39(ㅎ	대산등	-フ])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해산등기를 하여야한다.

-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②(생략)
  -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 第378條(決議取消의 登記) 決議한 事項이 登記된 境遇에 決議取消 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本店 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② (현 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 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 야 한다.

第407條(職務執行停止, 職務代行 者選任) ①・②(생 략)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528條(合倂의 登記) ①會社가 合倂을 한 때에는 第526條의 株 主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보고 에 갈음하는 公告일, 第527條의 創立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보 고에 갈음하는 公告日부터 本店 所在地에서는 2週내, 支店所在 地에서는 3週내에 合倂後 存續 하는 會社에 있어서는 變更의 登記.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하 는 會社에 있어서는 解散의 登 記,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 社에 있어서는 第317條에 定하 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549條(設立의 登記) ①・②(생 략)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 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

第407條(職務執行停止, 職務代行 者選任) ①・② (현행과 같음) ③前2項의 處分이 있는 때에는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 本店과 支店의 所在地에서 그 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528條(合倂의 登記)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 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 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 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 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 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 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 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549條(設立의 登記) ①・②(현 행과 같음)

<삭 제>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第602條(合倂의 登記) 有限會社가 合倂을 한 때에는 第603條에서 準用하는 第526條 또는 第527條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가 終結한 날로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合倂後 存續하는 有限會社에 있어서는 變更登記,合倂으로 因하여 消滅되는 有限會社에 있어서는 解散登記,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有限會社에 있어서는 第549條第2項에 定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606條(組織變更의 登記) 株式會 社가 第604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組織을 變更한 때에는 本店 所在地에서는 2週間, 支店所在 地에서는 3週間內에 株式會社 ④ (현행과 같음)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 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 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 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 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 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 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 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 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에 있어서는 解散登記, 有限會 하여야 한다. 社에 있어서는 第549條第2項에 定하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 登記) ① (생략)
  - ②前項의 境遇에는 外國會社는 그 營業所의 設置에 關하여 大 韓民國에서 設立되는 同種의 會 社 또는 가장 類似한 會社의 支 店과 同一한 登記를 하여야 한 다.

- 第614條(代表者, 營業所의 設定과 | 第614條(代表者, 營業所의 設定과 登記) ① (현행과 같음)
  -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 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 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 우에는 생년월일)
  -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 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5. 본점의 소재지
  -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 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③前項의 登記에서는 會社設立 의 準據法과 大韓民國에서의 代 表者의 姓名과 그 住所를 登記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第615條(登記期間의 起算點) 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依む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 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 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변경 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 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 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 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 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 조제2항 · 제3항 및 제614조의2 登記事項이 外國에서 생긴 때에 는 登記期間은 그 通知가 到達 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 달한 날부터 기산한다.